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서울고등법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허가(협의)에 대한 의견 송부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3793호(2019.03.18.자) 관련입니다.
2.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관리하는 국유지 사용허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국유지 사용에 대한 의견 1부. 끝.

서울고등법원장



법원서기	김진년	법원주사보	윤경수	법원사무관	박주인	과장	강희창
------	-----	-------	-----	-------	-----	----	-----

국장	전결 04/16 문대영
----	--------------------

협조자

시행	관리과-1287	(2019.04.16.)	접수	()
----	----------	-----------------	----	-----

우 / <http://www.scourt.go.kr>

전화 02-530-1192 /전송 / kjn0330@scourt.go.kr / 공개



국유지 사용에 대한 의견

2019. 4.

서울고등법원

1. 유상 사용허가(협의) 의견

- ▣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34조에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음
-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1년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데, 귀 시에서 시행하는 강남역주변 침수해소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지(서초동 1704 번지 등 일부 면적)는 관련 법률 등 제반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협의)를 하되 사용료는 유상으로 협의 의견임

2.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신청서 등 양식 송부

- ▣ 향후 국유재산 사용허가(협의)가 예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신청서 등 양식을 참조 바람(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참고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3. 안정성 검사 등 관련 영향평가서 자료 요청

- ▣ ① 법원 기숙사동과 하수관 터널 이격 거리 확인 및 안정성 검사 ② 방음·방진·소음·환경·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안정검사서·영향평가서 자료를 요청함